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842
----------	------

2024년 6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박칠성 의원(찬성자 26명)
-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칠성 의원)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의 선포

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2)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장 직급 상향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11조)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24.1.16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개정(시행 ‘24.7.17.)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별개로 시장에게도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안 제6조),
- 현행 임의규정인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현행 재난안전관리실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현행 대변인에서 재난안전실장으로 승격하고 그 외에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11조)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u>
5. · 6. (생략)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재난안전 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  
-----  
-----  
-----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⑤ 방송협의회 -----  
-----  
-----.

1. 당연직은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삭 제>

<p><u>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u></p> <p><u>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u></p> <p><u>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u></p> <p><u>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u></p> <p><u>⑤ (생 략)</u></p>	<p><u>&lt;삭 제&gt;</u></p> <p><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p>
-----------------------------------------------------------------------------------------------------------------------------------------------------------------------	--------------------------------------------------------

- 먼저, 안 제6조 관련하여 법에서 당초 시·도지사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만 있었으나 ‘24.1.16일자 법 개정 시 제36조제3항에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up>1)</sup>,
- 즉,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

[표] 법 개정(2024.1.16.) 신구조문대비표(제3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p><b>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② (생 략)</b></p> <p>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p>	<p><b>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p>

- 1)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5. 6. 30., 2020. 6. 2., 2024. 6. 18.>
- ②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p><u>따른 응급조치</u></p> <p>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p> <p>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p> <p>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p> <p>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p>	<p>하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로 본다.</p>
<p>⑤ 삭제</p>	<p>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p> <p>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p> <p>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p> <p>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p> <p>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p>
<p>&lt;신 설&gt;</p>	<p>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 따라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려는 경우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24.1.16일자 개정 전 법 제12조제2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 설치에 대하

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던 것에서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도 재난방송 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표] 법 개정(2024.1.16.) 신구조문대비표(제36조)

<b>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	<b>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p><b>제12조(재난방송협의회)</b> ①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u>둘 수 있다</u>.</p> <p>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u>지역위원회에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p> <p>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b>제12조(재난방송협의회)</b> ①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u>두어야 한다</u>.</p> <p>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u>시 · 도위원회에 시 · 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 · 군 · 구위원회에 시 · 군 · 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u>.</p> <p>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시 · 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 · 군 · 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 따라서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변경하며 설치를 의무화하여 상위법에 부합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같은 조 제4항은 현행 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던 것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하던 것에서 “재난안전실장”으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송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에 추가적으로

- 당연직으로서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한 실·본부·국장, 즉, 대변인, 소방재난본부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등을 포함시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관련 결정에 있어 신속성과 신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합당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칠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42
----------	------

발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의자: 박칠성 의원(1명)

찬성자: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춘곤,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춘선,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정준호,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6  
명)

##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장 직급 상향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 추계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를 “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1. 당연직은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⑤ 방송협의회 -----  
-----  
-----  
-----.

1. 당연직은 시의 실·본부·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

	<u>인 사람</u> <u>&lt;삭제&gt;</u>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u>산업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대</u> <u>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u> <u>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u> <u>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u> <u>람</u>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 <u>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u> <u>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u> <u>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u>	<u>&lt;삭제&gt;</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 나.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재난방송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재난방송협의회 = 17,000천원

$$= \text{참석수당} + \text{업무추진경비}$$

$$= 14,000\text{천원} + 3,000\text{천원}$$

- 참석수당 = 14,000천원

$$= \text{수당단가} \times \text{지급인원} \times \text{연2회} \times 5\text{년}$$

$$= 200\text{천원} \times 7\text{명} \times 2\text{회} \times 5\text{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0명 중 공무원 3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3,000천원

$$= \text{경비단가} \times \text{지급인원} \times \text{연2회} \times 5\text{년}$$

$$= 30\text{천원} \times 10\text{명} \times 2\text{회} \times 5\text{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